

장애여성만의 단독조항은 왜 필요한가.

1. 장애남성과는 전생애에 걸쳐 그 대우가 다르다.

장애여성 단독조항이 필요한 첫번째 이유는 장애인 인구의 절반인 장애여성은 전생애에 서 장애남성에 비해 더 차별받고, 장애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기가 장애여아일 경우는 버려지거나 심각하게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학교에 다닐 때가 되어도 장애여아는 장애남아에 비해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등하게 노동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장애여성에게 있어서 노동은 일반적 의미(일을 통한 정신적 향유와 경제력 확보라는 목적 외에도 다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다. 장애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빈곤에 빠지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교육율이 낮고 일할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여서 장애남성이나 비장애여성보다 의존해서 살면서 자기존엄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에게 있어 노동은 모든 성적인 무시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장애여성은 사회활동에 대한 기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동등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가사에 있어서도 장애로 인한 어려움은 고려되지 못한다.

여성은 노인이 되어서도 남성과 달리 양육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 여성은 기존의 장애와 노인성 장애를 중복으로 더한 장애상태에 빠지기 이러한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면 보다 빨리 소외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던져지기도 한다.

2.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다른 모성권(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특별한 조치의 필요)

장애여성만의 단독 조항이 언급될 필요성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4조는 장애인이 가족, 가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모성권은 다른 의미이다. 모성권은 아이를 임신할 권리, 출산할 수 권리, 아이의 어머니로서 존중될 권리이다.

장애여성의 모성권은 부정되거나 무시된다. 장애여성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편견으로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갖지 말라고 강요당하거나, 임신을 하여도 출산하지 못하도록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비장애여성이 겪는 모성 발현의 과정과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장애로 인해 임신 중에는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고, 양육을 할 때에도 안전하게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있어야 한다.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은 그들 자녀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의 조약에서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 장애여성에게 대한 인 지적

관점이 없다는 반증이다.

3. 성 폭력의 다른 양상

장애여성이 당하는 성폭력과 성적 착취는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장애여성을 찾아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한 명의 장애여성을 찾아가 은밀하게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여성이 당하는 이러한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주변에서 알고 있어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하여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없는 장애여성이나, 정신 지체장애여성에게 더욱 발생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공공연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여성이나 거동이 아주 불편한 지체장애여성이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장애여성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원인은 자기방어가 약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주변의 지지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데에 있다.

장애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폭력금지 조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장애여성이 겪는 특별한 위협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각 국가가 지금부터라도 혹은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에 대한 단독조항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4. 생활, 공공시설에서 장애여성의 여성성이 고려되지 않음.

장애인의 자유로운 생활과 이동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은 고려되지 못해왔다.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성적 보호 필요를 고려하지 못해왔으며, 화장실 이용 등과 같은 성별분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차이와 같은 특징이 인정되지 못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진행되어가는 나라에서 이 문제는 더욱 드러난다.

5. 남성보다 더 비혼자나 이혼자 많고, 사회보장이 더욱 절실하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사회에서 장애남성은 경제력만 있으면 비장애여성과 결혼하기를 장려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남성은 사회활동을 하도록 교육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결혼의 여건도 장애남성이 유리하다. 그러나 장애여성은 외모 지상주의 혹은 가정에서의 역할기대가 없음으로 해서 비혼자로 남게 되거나 보다 쉽게 이혼을 당한다.

전체 여성을 놓고 보았을 때 장애여성은 보다 빨리, 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지나 여건,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양육권을 빼앗기기도 한다. 비록 그 상대가 장애남성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장애여성은 보다 쉽게 가난에 빠지기 쉽고, 자신을 지지하는 가족이 없이 위협에 빠지기도 하고, 보다 쉽게 가난해질 수 있다.

6. 생활, 공공시설 등의 사회정책 속에 장애여성의 여성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장애여성은 모든 부분의 제도 관습 속에서 여성으로도 인정되지 못하였고, 장애인으로도 지지받지 못하였다. 장애인 속에서 남성은 있었지만 여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일컬어지는 장애인은 남성이었고, 그 장애남성이 다수의 기회를 가져왔다. 여성으로서 기대되지 못했던 장애여성은 여성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여성은 보다 교육받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악순환되는 소외와 차별 속에 놓여있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생활과 이동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은 고려되지 못해왔다.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성적 보호 필요를 고려하지 못해왔으며, 화장실 이용 등과 같은 성별분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차이와 같은 특징이 인정되지 못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진행되어가는 나라에서 이 문제는 더욱 드러난다.

7. 역사 속에서 전 대륙의 장애여성이 겪는 공통된 경험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모든 인권헌장과 법률 속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실현되고 있음에도, 왜 장애여성은 그 안에 없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법률의 포괄성과 실질성 속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는 찾아질 수 있겠는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의 장애여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각 국가의 경제력과 사회보장 정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인권침해와 복잡하고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지역과 성차별적 종교 관습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장애여성이 당하는 인권침해는 더욱 심하고, 더욱 개선하기 어렵다. 이는 비장애여성이 갖는 인권 증진 가능성과는 상당히 다르다.

세계의 장애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장애인으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아닌 장애여성으로서 인식될 할 필요성이 강하다. 전문이나 일반조항 속에서는 장애여성은 물론 장애인으로서 적용받아야 한다.

장애여성 조항에서는 일반조항이 장애여성을 소외시킬 수 없도록 강조하고, 장애여성들이 겪는 가중된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단독조항으로 그 장애여성 조항의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

장애여성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무엇 때문인가? 관습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장애여성들은 계속 폭력당하고 무시받고 빈곤해질 수 있는 위험